

『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7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7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8일

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구 연

나. 제안이유

○ 도 단위 이상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
명장, 장인, 기능인에 대하여 명칭에 구매 없이 숙련기술자들이
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
예우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대상 확대(안 제12조)
 - 당초 : 구미시 최고장인
 - 변경 :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준 신설(안 제13조)
 -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 조항 정비(안 제14조)
-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다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, 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」,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들로 예우 대상을 확대하고
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,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
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의 숙련
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
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